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」 제정고시 알림

1. 관련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-596호(2023.12.21.)
2.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6]을 삭제하고 「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」으로 불임과 같이 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4호, 2024.1.24.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주요 내용 >

- 가.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
- 나. 기준 설정,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3. 각 시·도 및 관련부처에서는 동 고시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동 제정고시는 우리 처 누리집(www.mfds.go.kr > 법령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 및 고시·훈령·예규의 고시전문)에서 열람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불임 : 「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4호, 2024.1.24.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(56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3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식품 관련 협회 및 단체, 소비자단체 등

주무관

박세종

연구관

김은정

유해물질기준 전결 2024. 1. 24.

과장

문귀임

협조자

시행 유해물질기준과-293

(2024. 1. 24.)

접수

우 28159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
처 유해물질기준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875

팩스번호 043-719-3850

/ sjpark517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